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8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1.

발의자 : 안병길 · 이현승 · 조명희
류성걸 · 이주환 · 권명호
조은희 · 전봉민 · 정동만
성일종 · 구자근 · 김학용
김태호 · 박대수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16년 「형법」이 개정(2018. 1. 7. 시행)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 · 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.

이와 관련하여, 개정 「형법」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,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및 제85조).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자나 형의”를 “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85조제3호 및 제5호 중 “사람이나 형의”를 각각 “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